

## 사회경제적 권리를 통해 본 멕시코의 여성인권\*

이순주(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I. 서론
- II. '여성권리'로서의 '인권'
- III. 멕시코에서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 IV. 멕시코 여성인권의 법적, 제도적 틀
- V. 멕시코 여성인권 현황
- VI. 결론: 넘어야 할 산들

###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 여성들의 인권을 사회, 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실질적 삶 차원에서 의 인권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법적보장을 통해 즉각적으로 이행가능하며 강제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은 '강령'적인 권리로서 목표달성을 위해 가용한 최대자원의 활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 경제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권리의 실현보다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사회, 경제적 권리는 사회 내의 자원 재분배 뿐 만 아니라 여성 지위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Soon-Joo Lee(Pusan Univ.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leti@korea.com), "Human Rights of Mexican Women: Economic & Social Rights".

항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 경제적 권리란 노동에 대한 권리, 의식주를 포함하여 적절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이 이에 포함 된다<sup>1)</sup>. 국제인권규약(1948)의 22조에서 26조까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권리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때, 여성이 분쟁이나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적인 인권을 향유하거나 자기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Forti 2005). 따라서 사회경제적 권리는 여성인권보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멕시코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체결과 무역개방 등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국가다. 이러한 국가발전의 흐름은 민주적인 사회적 발전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멕시코 여성인권의 측면을 본다면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멕시코의 성차는 세계에서 52위이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는 9위이다. 멕시코 보다 후진국에 속하는 페루나 우루과이보다도 훨씬 뒤쳐져 있다(WEF 2005, 8-9). 멕시코는 경제활동참여, 경제적 기회, 정치적 권한, 교육, 보건 모든 항목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멕시코의 여성인권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인권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상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멕시코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인권침해현황을 통해 멕시코 여성인권의 현주소를 알아 보고자 한다.

1) 인권개념의 변화는 3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세대는 안전, 재산, 정치참여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고, 제2세대의 인권은 복지, 교육, 레저 등과 같이 사회, 경제적 권리로 구성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는 UN인권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제3세대 인권은 민족자결, 환경, 그리고 소수민의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권개념들은 모두 20세기에 들어 발전해 왔다(짐 아이프, 58-83참고).

## II. ‘여성권리’로서의 ‘인권’

‘인권’ 개념은 17-18세기에 국가나 정부의 제한을 통한 개인의 삶,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적’인권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개념은 19세기에 들어 경제, 사회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20세기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권, 인류의 공동유산으로부터의 혜택을 누리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 문화적 권리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1948년의 ‘세계 인권선언’에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 기존 인권이론의 문제점은 ‘인권’개념이 남성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이 배제되어왔다는 주장들을 제기해 왔다(Eisler 1987; Bunch 1990).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여러 차례의 여성권리와 관련한 선언들을 통해 기존의 인권개념에 여성의 입장이 점차 부가되기 시작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여성단체의 활동들도 개인-국가 간의 개념으로 제한되어있던 전통적인 인권의 개념을 재 정의하는데 기여하였다(Toto Gutiérrez 1999, 35).

여성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명제는 여성권리에 관한 논제들이 곧 여성인권의 한 부분임을 의미한다. 여성인권이란 구체적으로는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뜻한다. 여기서 차별이란 ‘성에 근거한 차별, 배제, 또는 제한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든 남녀의 평등을 기초해 여성이 행사하는 권리 및 기본적 자유를 해치거나 무효로 하는 효과나 목적을 가진 것’(여성차별철폐조약, 1979년)을 뜻한다.

‘인권’이 여성발전의 주요명제가 된 것은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부터다. 이 대회에서 여성인권은 ‘보편적 인간의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불가분적 권리’로서 정의되었다. 또한 여성권리는 곧 인권<sup>2)</sup>임을 명시함으로써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2)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북경선언문(1995년 9월)은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요

포괄적인 것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이 대회에서 정한 행동강령 12개 중의 하나<sup>3)</sup>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행동강령의 제정은 기존의 여성평등과 여성발전전략<sup>4)</sup>이 경제개발의 촉진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어 온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개발’의 틀이 여성발전을 경제개발과 경제활동참여증대 등을 통해 진전시키고자 했다. 이와 달리 ‘인권’의 틀은 여성개인과 각 그룹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했다. 또, ‘인권’이라는 틀은 여성들의 요구를 가장 근원적인 ‘도덕적’ 부분들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접근이 갖지 못했던 중요한 설득과 항의의 도구를 제공했다. 인권은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의 행동프로그램’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of Action, Chapter IV, 4.1). 따라서 인권은 항상 우선시 되어왔던 다양한 국가정책들 -경제개발, 환경,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 효율성을 위한 정책들- 을 위해 이용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나 가치가 아니다. 이러한 인권은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각 국가들이 이에 동의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하도록 약속받으며 이를 존용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여성들의 다른 요구들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국내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의 틀을 통한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접근법과 다르다.

---

내용이며, 체계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해야 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공식화했다.

- 3)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정한 행동강령에는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 교육 및 훈련, 건강,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제도적 메커니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女兒) 등 12개의 의제가 포함되어있다.
- 4) 여성발전전략과 개발정책에 관한 주요 이론적 관점 및 사례들에 관해서는 이순주(2002) 참고.

### III. 멕시코에서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멕시코에서의 여성인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실태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인권의 법적 논쟁의 핵심은 ‘평등’이다. 팔콘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논쟁은 3가지의 관점으로 나뉜다(Falcón 2002, 231). 첫째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며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이란 이러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적 페미니즘과 연결된 것으로서 양성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특정한 권리의 구체성을 회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다르다, 그러므로 다른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생산, 육아, 가사노동의 보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차별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즉, 우리는 다르지만 같은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요구는 페미니스트 운동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함께 제시되었는데 여성권리는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왔고,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논쟁의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점은 ‘우리는 남성과 같다 혹은 다르다’는 비교 및 평가의 대상으로 남성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법은 성으로 계서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여성들을 법의 주류의 하부와 주변에 잔존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이러한 세 가지 관점들이 법체계에 포함되기까지는 다양한 단계를 거쳤다.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는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의 형식적인 평등에 집중했고, 차츰 노동, 성폭력에서의 처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에서 전문가들과 여권 운동가들의 관심으로 집중되면서 다양한 법적환경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법령의 공포와 관련한 전략들뿐만 아니라 인권의 개념, 인권의 권리주체에 대한 개념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1970년대는 여성들이 구체적인 집합적인 행위자로서 새로이 등장

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 멕시코에서는 공장과 학교 등에서 소규모 NGO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멕시코에도 이 시기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1968년 플라렐롤코 학살사건이후 좌파성향의 중간계층여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페미니즘이 형성되었다. 1975년 UN 여성의 해 제정과 멕시코시티에서의 세계여성대회는 정부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단체들에게 자극이 되었다. 당시 세계여성대회에 참석한 멕시코 대표는 집권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좌파 여성들은 1976년에 페미니스트 여성연대(Coalición de Mujeres Feministas)를 결성하고 출산결정권, 성폭력반대, 자유로운 성의 선택 등을 주장했다(Valdés 2000, 71). 이러한 흐름들은 멕시코 내 법적환경에서의 여성의 조건들에 관한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서도 이어졌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에서 1975년 ‘멕시코 여성의 법적 조건(Condición jurídica de la mujer en México)’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세세한 법적규정에 대해 의문을 결여한 채로 여성에 대한 법적평등을 강조했다. 일부 저자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여성권리의 확대와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의 여성상황에 대한 민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멕시코 사회의 특징적인 일면으로서 여성들의 예측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 또한 규범적인 개념과 사회현실과의 괴리도 이 책에서 지적되었으나 여성권리와 관련한 법적조항들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법조건 내에서의 차별적인 여성권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는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존재가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라틴아메리카 내에서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서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멕시코 내에서도 자발적인 여성운동을 활발하게 나타냈다. 여성운동의 활동은 재생산권, 사회내의 여성에 대한 폭력, 노동에 대한 권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불 등이 주요 이슈들이었으며, 당시 여성운동 방법들이었던 가두행진과 모임들은 매우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인터뷰, 2005/02/07). 최근에는 가정폭력근절, 재생산권, 평등이 동

반되는 발전, 권력지배에의 참여, 문화변동 등에 대한 노력에 집중해 있다(Valdés 2000, 48).

멕시코에서 여성권리의 법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고, 특히 여성차별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운동과의 연대가 두드러졌다. 학계에서는 1984년 ‘멕시코의 법적변화와 여성’이라는 연구에서 멕시코 정부가 UN협약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는 비교적 논의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던 여성의 법적권리를 하나의 담론으로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노동 분야에서의 평등의 원칙에 대한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 권리, 다른 국가들과의 노동법의 비교 등도 시도되었다(De Pazos 1987b).

이러한 여성의 법적권리에 대한 연구는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노동, 사회보장, 선거, 행정, 농업의 5개 분야에서 여성권리가 헌법과 연방법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그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협정을 기준으로 어떠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가를 검토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여성권리에 관한 법적 보장이 많은 분야에서 증진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 예로 1992년 신농업법은 오히려 여성 권리의 측면에서는 퇴보했다고 보았다. 신농업법은 에히도의 민영화를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토지개혁의 첫 15년동안 여성들은 미망인 이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만 에히도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에히도에 대한 소유권은 대부분 남성들에게 있고, 여성들은 에히도의 생산에는 참여할 수 있었으나 ‘재산권’에 있어서는 제외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민영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결정권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에히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구성원이 아니었으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이나 신용대부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Young 1998, 3). 또, 이후 범죄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법적용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수감여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여성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및 조사는 최근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1995년 베이징 여성회의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에서 1)법률에 관한 분석 2)사회 전 분야에서의 단순 통계조사 3)구체적인 인권침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4)주제별 사례 및 현황조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 및 연구들은 국가기관으로서는 국립여성연구소(INMUJERES), 국립정보지리통계원(INEGI),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CNDH)가 주로 수행하고 있고, 학계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여성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로 본다면 양성평등 및 여성권리 확대를 위한 모든 사전조사들이 여성인권에 관한 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 정부기관에 의한 여성인권의 연구의 주요 이슈는 사회 및 가정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교육, 모자보건에 많이 집중되어있으며, 최근에 재소자인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이 좀 더 강조된 연구들은 정부의 ‘정책’의 수립 및 수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국립여성연구소는 연구와 함께 정부의 여성정책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인터뷰, 2005/02/02). NGO를 통해서도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재생산권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인터뷰, 2005/02/04).

#### IV. 멕시코 여성인권의 법적, 제도적 틀

멕시코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틀은 국내법과 함께 국제적, 지역적 협약의 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적, 지역적 협약의 체결은 협약당사국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최근의 멕시코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설치 및 제도적 발전도 상당부



분 이러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의 국가적 책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IV.1. 국제협약

멕시코는 2000년도까지 45개의 인권관련국제문서에 가입했으며 (CONMUJER 2000), 2004년 현재까지 UN의 인권관련의정서에는 총 11건에 비준해 있으며, 그중 직접적으로 여성인권과 관련한 의정서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금지 의정서(CEDAW)와 이에 대한 선택의정서(CEDAW-OP)이다.<sup>5)</sup> UN과 미주국가기구(OAS)의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멕시코가 서명한 여성인권관련 의정서 및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Rojas Rojas 2000, 75; 82).

##### UN협약

- 부녀자 매매금지 국제협약 (Convención Internacional para la Suspensión de la Trata de Mujeres y Menores, 1921).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io para la Represión de la Trata de personas y de la Explotación de la Prostitución Ajena, 1949).

---

5) 1)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1981/06/23) 2)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CCPR) (1981/6/23) 3)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CCPR-OP1) (2002/6/15) 4)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CERD) (1975/03/22) 5)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81/09/03) 6)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OP) (2002/06/15) 7)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 (1987/06/26) 8) The 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CRC) (1990/10/21) 9)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CRC-OP-AC) 무력분쟁에 참가금지 (2002/04/15) 10)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OP-SC), 어린이 인신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 금지 (2002/04/15) 11)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CMW) (2003/07/01) 비준하지 않은 협정은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ed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CCPR-OP2-DP). (UN, 2004)

-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Políticos de la Mujer, 1952).
-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Convención sobre la Nacionalidad de la Mujer Casada, 1957).
- 여성에 대한 차별제거에 관한 선언(Declaración sobre la Eliminación de la Discriminación contra la Mujer, 1969).
- 무력분쟁 및 비상사태시 여성과 어린이보호에 관한 선언(Declaración sobre la Protección de la Mujer y el Niño en Estados de Emergencia o Conflictos Armados, 1974).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ción sobre la Eliminación de Todos las Formas de Discriminación hacia la Mujer, 1979).

OAS 협약

- 여성시민권부여에 관한 미주국가협약(Convención Interamericana sobre la Concesión de los Derechos Civiles a la Mujer, 1948).
- 여성의 정치적권리부여에 관한 미주국가협약(Convención Interamericana sobre la Concesión de los Derechos Políticos a la Mujer, 1948).
- 인권에 관한 미주국가협약(Convención Americana sobre Derechos Humanos, 1969).
-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처벌 및 예방에 관한 협약(Convención Interamericana para Prevenir, Sancionar y Erradicar la Violencia contra la Mujer, 1994).
- 미주인권위원회(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CIDH).

인권이 모든 개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일치성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고 볼 때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CNDH 2003, 32). 미주여성위원회(CIM)<sup>6)</sup>는 ‘벨렘 도 빠라 협약’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처벌 및 예방에 관한 미주협약’이 발효된 이후 이 협약의 제10조에 의거하여 미주 각국으로부터 여

---

6) 미주여성위원회는 1928년 2월 18일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내에 여성권리, 이익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

성에 대한 폭력근절, 처벌 및 예방에 관한 보고서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에 의하면, 벨렘 도 빠라 협약 발효이후 워싱턴 등을 통해 법원의 남성, 여성재판관들에게 양성평등관점의 적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가족 내 폭력의 예방과 지원 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쉼터 등을 마련하도록 한 내용을 중요한 여성인권의 법적 진보의 사례로 들었다 (CONMUJER 2000, 46).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멕시코의 협약이행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1995년에서 2003년까지 베이징 회의 이후 여성관련 협약이행에 관한 UN의 보고서에 의하면,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들 중 여성관련 협약이행에 있어서 유일하게 후퇴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고).

<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여성관련 국제협약 이행정도(%)<sup>7)</sup>

국 가	1995	2000	2003
Argentina	-	75.9%	-
Bolivia	51.7%	58.8%	60.0%
Brazil	68.9%	-	-
Chile	68.4%	74.0%	75.2%
Colombia	58.2%	68.0%	-
Costa Rica	70.9%	74.0%	-
Ecuador	56.2%	58.5%	-
El Salvador	58.4%	66.2%	68.2%
Guatemala	-	51.8%	-
Honduras	55.1%	59.6%	64.1%

7) 이러한 이행에 관한 비교는 3가지 항목 여성의 정치참여, 경제적 자립과 빈곤, 여성의 보건 및 성적, 재생산권리의 3가지 항목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합한 것으로서 멕시코의 경우 정치참여분야에서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연방의회에서의 여성정치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의 여성참여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Valdés, Muñoz y Donoso(eds.) 2004).

Mexico	66.0%	65.7%	65.5%
Nicaragua	59.6%	50.4%	56.1%
Panama	64.1%	70.8%	68.2%
Paraguay	51.3%	64.9%	68.9%
Peru	57.9%	65.8%	65.9%
Dominica Republic	71.1%	72.6%	72.0%
Uruguay	-	-	-
Venezuela	60.5%	65.0%	66.0%
평균	61.2%	60.4%	66.4%

자료: (Valdés, Muñoz y Donoso(eds.) 2004, 14)

#### IV.2. 국내법과 제도

멕시코의 헌법의 기본은 1917년 헌법이다. 이 헌법은 생명, 자유, 법적보장과 함께 모든 인간의 가치를 보장한다. 여성들에게는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그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1조와 4조이다. 제1조에는 <모든 개인은 이 헌법이 허용하는 보장을 누린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제4조에는 <남성과 여성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은 가족의 발전과 단위를 보호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여성노동과 관련해서는 1917년 헌법(4조, 5조, 123조)외에 연방노동법(3, 4, 123 그리고 132조), 차별제거 및 예방을 위한 연방법률(제3장), 협력사회법률(11조), 주 및 군에 대한 노동법률(33조)이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들로는 농업법률(12, 63, 71조), 연방구시민법, 선거과정 및 제도에 관한 연방규약, 연방공공행정조직법률(27조 25항), 차별제거 및 예방을 위한 연방법률(제3장), 원주민발전국가위원회법률(제3조), 농촌지속발전에 관한 법률(15조, 154조, 162조) 등이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에 관한 일반 법률의 33조에 여성의 취약성이 언급되어 있다. 여성의 보건과 관련한 법률

들로는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년에 관한 연방법률, 보건에 관한 법률(61조, 65조, 326조, 466조),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보건에 관한 법률(5, 24, 28, 79조), 멕시코 대외서비스 법(제9장)이 있다. 가족 관계에 관해서는 연방구시민법(11장), 청소년 및 소년, 소녀 권리보호법(20조), 연방구 소년소녀 권리법, 멕시코합중국 헌법(30조), 국적법(20조), 고령자 권리법(제10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재소자에 관한 규정은 형확정자에 관한 사회 재적응에 관한 최소기준 법(제6조)과 군사재판법에 나타나있다(Escobar 2004, 191-2).

31개주와 1연방구로 구성되어있는 멕시코 연방에서는 각 구성단위마다 여성과 미성년자와 관련한 법률 현실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그 중 여성인권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은 아래의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데, 이에 대한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중 미성년자 매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32개 연방단위 중 30개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폭행 피의자나 여성을 납치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는 경우 이를 면죄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에 많은 연방단위들이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법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멕시코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온 공공보건기관에서의 여성피임기구 시술을 금하는 법률개정도 절반 이상의 주에서 시도해 오고 있다. 이 부분은 헌법 제4조에 의해 배우자들이 자녀의 수과 거주공간을 결정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 온 것으로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컸다(PAN 1999, 4).

<표 2> 여성과 미성년자에 관한 법 현실화를 위한 주요 이슈들과 이를 다루고 있는 주의 수와 비율

주요테마	주의 수	비율(%)
미성년자매수에 대해 가축절도보다 미약한 처벌을 내리는 것	30	96.8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는 경우 면죄하는 것	25	80.6
일회이상의 성범죄에 대해 가축절도보다 미약한 처벌을 내리는 것	21	67.7

납치범이 피랍자와 결혼하는 경우 면죄하는 것	21	67.7
강요된 피임을 금지하지 않는 것	16	51.6
기혼여성이 이혼하게 될 경우 보호하는 것	12	38.7
여성이 일하기 위해 남편의 동의를 구하는 것	8	25.8
성폭력의 분류	7	22.6
부부에게 공동의 책임을 지우는 것	7	22.6
여성에게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7	22.6
대부분의 연령에 결혼을 허용하는 것	3	9.7

자료: [http://www.inmujeres.gob.mx/pprincipal/derechos/derechos\\_numero.gif](http://www.inmujeres.gob.mx/pprincipal/derechos/derechos_numero.gif)

여성인권과 관련한 멕시코 최초의 공공기관은 1989년에 설치된 멕시코시티 사법사무국(Procuraduría de Justicia del Distrito Federal)내의 성범죄특별기관(Agencia Especializada en Delitos Sexuales)이다. 이후 이와 유사한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Escobar 2004, 192). 그럼에도 이후 전문적인 범죄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성폭력특별감찰국(Fiscalía Especializada para Delitos Sexuales)이 설치되었다. 같은 해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규정 및 처벌과 관련한 형법개정이 있었다(Cano 1996; Scholtys). 국가인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가 수행한 첫 과제가 ‘가족, 어린이, 그리고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이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가족과 여성에 최우선적으로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2001년에는 국립여성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las Mujeres)가 창설되어 정부활동 내에서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요구들을 수렴하고자 했다. 현재 여성인권과 관련한 NGO와 사설지원기구의 수는 6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Escobar 2004, 192).

## V. 멕시코 여성인권 현황

인권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통해 편의상의 범주화와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다. 전자가 인간의 자유권에 초점을 두었다고 본다면 후자는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사회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통해 본 사회경제적 인권에는 1)일할 수 있는 권리 2)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일정기간의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유를 가질 권리, 4)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5)교육받을 권리 6)자신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등으로 요약된다. 여성에게는 1)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 보장, 2)임산부가 출산전후에 적정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을 향유함에 있어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권리들은 수차례의 법 개정과 새로운 법안의 신설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보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법 앞에서의 양성간의 평등과 여성인구의 노동, 보건, 교육, 법 행정, 공공행정 그리고 정치참여 등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은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Toto Gutiérrez 1999, 36).

### V.1.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타의 ‘인권’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

8)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들에서의 여성과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Laura Salinas Beristáin과 UN여성발전기금(UNIFEM), 그리고 콜롬비아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한 *Derecho, Género e infancia: Mujeres, Niños, Niñas y Adolescentes en los Códigos Penale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Hispano*를 참조.

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인권’이다. 이는 남성우월주의와 성별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차이에 근거한 사회구조의 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다양한 폭력에 의한 기초적인 인권침해는 자유와 신체적통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동반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각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남성의 삶과 자신들의 가치가 연관되어 있다고 믿도록 교육받아 온 여성들의 신념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참아내도록 함으로써 더욱 더 그 근절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INMUJERES 2003, 8). 여성에 대한 폭력은 행위자와 장소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가정 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INMUJERES와 INEGI는 가 실시한 ‘가정 내의 관계역학에 관한 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에서는 ‘양성간의 폭력(violencia de genero)’, 과 ‘배우자폭력(violencia en la pareja)’을 정신적, 물리적, 성적, 경제적 폭력으로 나누고 ‘가정폭력(violencia intrafamiliar)’은 정신적 물리적 폭력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했다.<sup>9)</sup> 이 조사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통계를 위한 폭력의 실태에 관한 조사가 아니라 경제적 수준, 교육 정도, 거주 지역, 연령 등과 같은 기존의 지표들을 비롯하여 매우 세부적인 부분들<sup>10)</sup>까지 설문조사에 포함되었으며 각 설문과 폭력정도와의 연관관계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결정권지수<sup>11)</sup>와 가정 내에서 여성의 결정의 자유<sup>12)</sup>에 관한 조사 등을 통

9) ‘양성간의 폭력’은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유지, 재생산하는 경향을 가지며, 여성에게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하는 정신적, 물리적, 성적, 경제적 도발, ‘부부간의 폭력’은 부부간의 격차에서 기인한 상대방에 대한(주로 여성) 모든 형태의 도발, ‘가정 내 폭력’은 가정에서 권력이나 힘으로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을 의미한다(INMUJERES 2000, 18).

10) 배우자와 응답자의 교체시작연령, 유아 및 청소년기의 가정 내 피폭력경험, 현 배우자와의 동거년수, 현 배우자가 다른 이성상대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상대로부터의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아내나 남편이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생각될 때 때리는지의 여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의 여부 등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설문이 실시되었다.

11) 자녀양육에 관한 결정권, 임신에 대한 결정, 주요 지출에 대한 결정, 일반적 지출에 대한 결정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0.50, 0.20, 0.16, 0.14)하여 각 지수를 합하여 산출.

12) 이 분석에서는 여성의 개인적 자유지수를 ‘쇼핑을 나갈 수 있는 자유 + 친지를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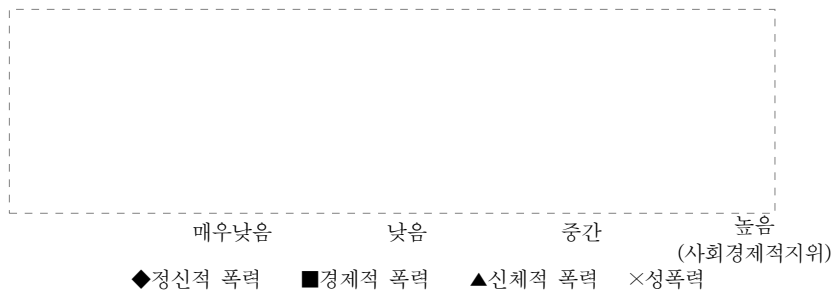


해 배우자사이의 폭력과 여성권리실현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멕시코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15세 이상 여성 중 44%가 성별차이에 기인한 가정폭력의 어느 한 가지라도 경험하고 있다. 이들 중 16%가 유년기에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고, 이 중 53%의 여성들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5%가 그들의 남편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MUJERES 2004, 68).

INMUJERES가 실시한 배우자폭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중등학교를 중퇴한 여성들에게 있어 피폭력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학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과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피폭력 경험은 학력과는 커다란 연관성이 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가정폭력과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폭력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또,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정신적, 경제적 폭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은 농촌지역이 약간 높게, 그리고 신체적 폭력은 도시와 농촌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배우자폭력 정도<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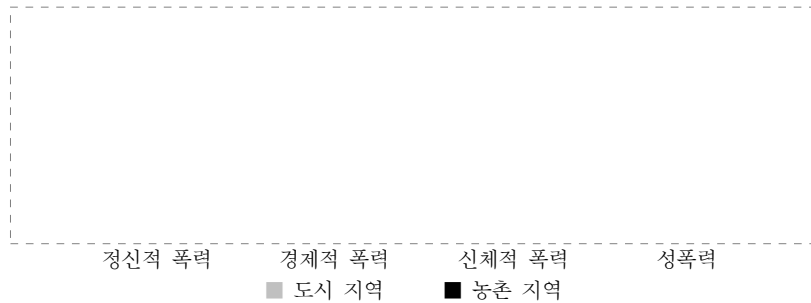


자료: (Instituto Nacional de las Mujeres 2004, 56)

문할 수 있는 자유 + 친구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 + 놀러갈 수 있는 자유'로 설정하여 지표화 했다.

13) 0.5:폭력의 정도가 높음 0: 폭력 없음

<그림 2> 멕시코의 농촌과 도시의 유형별 가정폭력의 정도<sup>14)</sup>



자료: (Instituto Nacional de las Mujeres 2004, 56)

가정을 벗어난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행, 구타가 가장 흔한 사례들인데,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더욱 더 많이 나타난다. 후아레스 시(Ciudad Juárez)와 국경지역에 있는 공업도시들의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멕시코 정부는 많은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후아레스 시를 포함한 치와와(Chihuahua)주 북부지역에서는 2003년도에 10명 이상, 2004년도에 24명의 여성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한해 만에 58%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 중 24명이 살해된 것이고, 8건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La Jornada*, 2005/1/5). 이러한 후아레스 시에서 살해당한 여성에 대한 통계는 명확하지 않다. 한 NGO의 보고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살해당한 여성의 수는 320명에서 382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살해당한 여성들은 성폭행, 고문, 구타 등의 심한 신체적 폭력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NHRC 2005). 멕시코국가인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CNDH)는 치와와주와 후아레스 시 당국에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시당국은 이를 무시했고,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로부터 '참을 수 없는 정부의 무관심의 전형'(Amnistía Internacional 2003)으로 비난받고 있다.

14) 0.4:폭력 정도가 높음, 0:폭력 없음.

## V.2. 노동

멕시코 여성의 노동권리에 대한 침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는 노동할 권리자체에 대한 침해다. 멕시코의 다양한 주에서 민법(códigos civiles)이 가정을 가진 여성에게 노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PAN 1999, 44).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의 동의 하에서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두랑고(Durango), 아구아스 칼리엔떼스(Aguas. Calientes) 소노라(Sonora), 누에바 레온(Nueva León), 오아하카(Oaxaca), 과나화또(Guanajuato), 미초아칸(Michoacán), 따바스코(Tabasco), 멕시코연방구(Distrito Federal de México)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해 왔다(FAO 1994).

둘째, 임금 차별과 고용차별이다. 멕시코의 헌법과 노동법은 '동일한 시간의 동일한 정도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지불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력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저임금노동에 집중되어있고, 적은 임금을 받는다. 멕시코는 ILO의 1961년 동일임금에 관한 협정,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협정을 비준했다. 멕시코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용 및 임금의 차별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의 제네바에서 국제자유노동조합연합(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멕시코의 헌법상에서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sup>15)</sup>은 실제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었다(ICFTU 1997).

최근 수년간 멕시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임금비율을 1995년, 2000년, 2003년을 비교했을 때, 각각 57.0%, 58.1%, 62.6%를 나타냈다. 꾸준히 비율이 증가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남미 전체의 평균인 64.8%, 67.2%, 67.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Valdes, Muñoz y Donoso 2004, 31). 여성노동력은 저임금직종에 집중되어있고, 공공행정에 있어서도 고위직에서 남성고용비율은 여성의 3배에

15) 헌법 123조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CFTU 1997). 고용에서의 차별은 노동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특히 모성보호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에 대한 차별사태가 다수 보고되었다. 실제로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많은 경우 계약조건으로서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1995년 6월 1일 멕시코시인권위원회(La Comisión Mexicana de Derechos Humanos del Distrito Federal)는 취업을 위한 비임신증명서를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멕시코 시티정부와 기업들에게 권고하기도 했다(PAN 1999, 44).

멕시코 노동법은 모성보호에 관해서는 매우 강하게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출산 전후 6주씩 총 12주의 휴가와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위생적이고 적합한 환경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완전함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해고를 금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노동자는 무겁거나 위험한 일,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고용주들은 이러한 고비용의 보장을 피하기 위해 고용 전후에 임신검사를 요구하거나, 과중한 업무나 고난도의 업무를 부과하는 편법으로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기도 해 왔다(U.S Dept. of Labor & U.S. Embassy 2002, 14).

멕시코에서 특히 마킬라도라 부문에서의 국제무역과 여성노동력에 대한 차별에는 개연적인 관계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마킬라도라 노동자들은 여성들이고, 그들은 매우 취약한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마킬라도라 부문의 노동시장이 저임금, 저숙련 및 높은 유동성으로서 특징지워지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부분적으로는 마킬라도라에서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기인하기도 하며, 이러한 낮은 노동비용은 멕시코의 수출에 공헌한다(ICFTU 1997). 이러한 마킬라도라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마킬라도라 내의 기업의 수가 국가노동 감독관과 연방보건안전국이 감독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기도 하다.

멕시코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70년 17.6%에서 2000년에

36.4%를 기록한 이후 3년 후인 2003년도에는 35.3%로 감소했다(*La Jornada*, 2005/03/08). 이러한 경제활동참여율의 감소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교육기회와 사회참여기회 격차에서 기인하는 바 크며, 여성들에게 더욱 많은 불평등을 야기한다. 2000년 현재 멕시코에는 편부모가정이 360여만 가구에 달한다. 이중 편모가구가 81.7%이고 편부가구는 18.3%다(INMUJERES 2003, 11). 2004년 12월 멕시코 정부는 최저임금을 1일 47페소로 정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하루에 4.5불정도가 된다. 이는 개인생활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여성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La Botz 2005). 이러한 저임금은 여성들을 빈곤에 처하게 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다.<sup>16)</sup> 멕시코 여성들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편모가정의 빈곤을 심화하고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V.3. 교육

교육은 개인, 가족,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능력 및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노동시장진입과 다른 모든 여성인권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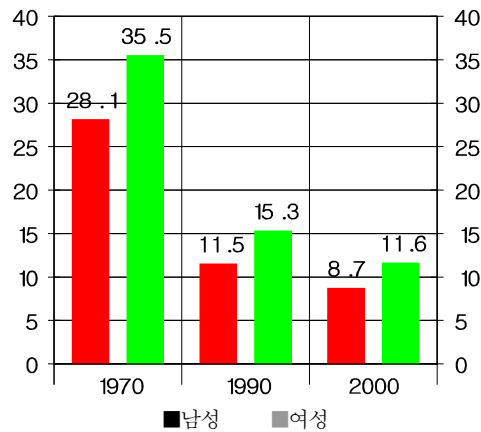
멕시코의 문맹률은 1990년도에 12.3%에서 2000년도에 9.35%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4%정도의 성별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별격차는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각 주별 여성의 문맹율도 가장 높게 나타난 치아파스 주(28.9%)는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누에보 레온 주(3.8%)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나 성별격차보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INEGI/INMUJERES 2004).

<그림 3>를 통해보면, 멕시코여성에 대한 교육은 1970년대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16) 농촌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기회조차도 부족하여 경찰과 고객으로부터의 폭력을 감수하고 AIDS에 감염에 노출되어있는 매춘부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La Botz 2005).

15세 이상 인구 중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는 남성이 8.7%, 여성이 11.6%정도로 나타나 그 편차는 2.9%로 나타났다. 각 주별 통계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의 성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치아파스(chiapas)와 오아하카(Oaxaca)로 각각 10.2%, 9.5%의 성별격차를 보였다. 전국평균 성별격차가 2.9%임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에서의 교육의 성별격차가 매우 두드러졌다(INEGI/INMUJERES 2004, 246).

<그림3> 1970년, 1990년, 2000년도의 15세 이상 인구 중 성별 무교육자 비율 (%)



자료: (INEGI/INMUJERES 2004, 240)

멕시코에서는 1993년부터 교육근대화협약(Acuerdo Nacional para la Modernización Educativa) 이후 중등교육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15세 이상 인구 중 기초교육을 마친 남성은 19.5%, 여성은 17.5%로, 1990년보다도 남성과 여성 모두 5.9% 증가했다(INEGI/ INMUJERES 2004, 246). 교육면에서의 성별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교육은 남성보다 뒤쳐져 있으며, 농촌에서의 양성간의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비숙련, 저임금 노동력으로 남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V.4. 재생산권

멕시코 헌법은 멕시코 헌법 제4조에 의해 모든 사람은 자녀의 출산과 그 권리를 인정받는다.<sup>17)</sup> 멕시코 연방의 각 주에서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신의 지속으로 인해 모성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경우와 기형과 같은 태아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리고 사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은 대부분 불법이다. 이는 1931년부터 적용되어 왔다. 이후 2000년 헌법 148조의 개정을 통해 임신이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인공수정에 대한 임신중절을 허용했다. 예외적으로 차아파스 주에서만 주 형법 393조에 의해 경제적 이유와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가족계획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Hernández & Garcete 2004). 2003년 12월에는 멕시코시티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절 기술을 범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멕시코시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불법적인 임신중절에 의해 여성이 처하게 되는 피해는 심각하다.

<표 3> 멕시코 주별 형법에서의 임신중절 허용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이유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주의 수
임신이 성폭행의 결과인 경우	32
임신중절이 여성의 사고의 결과인 경우	29
임신이 여성에게 사망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27
태아가 심각한 유전학적, 선천적 결함이 있을때	13
임신이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	9
동의없이 이루어진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일 경우	9
심각한 경제적 이유가 있거나 자녀가 최소한 3명인 경우	1

자료: (Hernández & Garcete 2004)

17) Artículo 4º. “Toda persona tiene derecho a decidir de manera libre, responsable e informada sobre el número y el espaciamiento de sus hijos”

18) 임신중절시술을 ‘비 범죄화’ 할 것을 먼저 제안 한 것은 PRI당이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PRI당과 PRD당의 이 법안과 관련한 상호 견제는 상당히 강했다. 이에 관해서는 (Lamas 2004, 10-11) 참고.

멕시코에서는 매년 18만 1천명의 여성이 사망한다. 그 중 1266명의 여성이 ‘모성사망’, 즉 임신과 관련하여 사망하는데, 이중 매년 1000여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Acevedo). 이러한 상황은 농촌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 교육, 비용, 보건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가임 여성의 45%만이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La Botz 2005), 원하지 않은 임신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출산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갖는 사회, 경제적 제약은 매우 크다.

또, 청소년의 임신은 청소년의 교육기회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멕시코시티의 여자 고등학생의 10-12%가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고 있다(La Botz 2005).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여성의 보건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재생산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산권의 보장은 다른 라틴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도 가톨릭전통<sup>19)</sup>과 사회 관념에 의해 크게 제약받고 있다.

## VI. 결론: 넘어야 할 산들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의 형성과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사회 및 경제적 보장이 멕시코 여성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실현과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비준한 국제협약은 다양하고도 많지만, 이에 대한 이행정도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또한 멕시코 여성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폭력, 노동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부족, 재생산권 등을 통해 살펴본 사회, 경제적 인권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었다.

19)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에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로 “Católicas por el derecho a Decidir”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가톨릭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죄악이라는 것이지만, 이 단체에서는 ‘임신중절’의 선택도 도덕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http://www.catolicasporelderechoadecidir.org/>)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성단체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분야는 약간의 비중을 달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는 정부와 여성단체, 학계 할 것 없이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폭력’문제는 국내외적 환경에서의 여성인권 강조가 사회문화적 이유로 극히 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왔던 가정 내에서의 폭력문제들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도록 유도한 대표적인 여성인권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정부기관들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여성인권분야는 교육, 모자보건등과 같이 정부정책의 수립 및 수정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이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여성재소자 인권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생산권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자기신체에 대한 결정권뿐만 아니라 보건권의 획득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과 빈곤탈피’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인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특히 여성에 집중한 빈곤탈피, 혹은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정책은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각국정부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의 틀은 기존의 ‘개발’의 틀과는 달리 여성인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멕시코의 여성인권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즉각적인 상황의 전환이 가능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는 달리 사회 및 경제적 권리는 사회의 전통 및 관습, 관념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상황의 개선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을 확보하는 일, 국제인권협약과 인권 관련 법안들을 현실로 변환시키는 일 등은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변화가 없이는 근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인권문화’의 수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

의 정책과 법적개선의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멕시코 정부의 여성연구소(INMUJERES)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연구소의 설립이후 각 정부부처에서 소관되어야 할 여성관련 조사 및 정책입안기능을 INMUJERES로 집중시켰다. 이는 정부부처간의 상호협력이 담보된다면, 충분히 통합적인 여성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멕시코 정부의 여성연구소를 통한 학계 및 사회단체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확대를 통한 정책개선노력은 여성인권 증진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iscuss mexican women's human rights as an old but new instrument to demands women's rights and gender equity. Those rights which constitute Human Rights are always existed with human life. But the human rights approach offers a new, effective and strong instruments to protest against violence of women's rights though connecting women's demands to basic human's moral aspects. In that aspects human rights approach is different from development approach which gave emphasis on improving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for women rights development.

Mexico has ratified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women's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realization of those conventions is crucial for mexican women's human rights. Mexic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INMUJERES and reinforced its function to investigate and make policy proposal to improve mexican women's situation. It seems that there exist many tasks and obstacles to overcome. In 31 mexican states and 1 federal district, legal status of women is different. And there exist many disparities and inequalities according gender, urbanization, states and so on. Socio-economic equities and Human

rights of women can be acquired more easily through government's strong effort to reform legislation and system which can lead socio-cultural system.

Key Words: Mexico, Women, Human Rights, Economic Rights, Social Rights /  
멕시코, 여성,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논문투고일자: 2005. 11. 02

심사완료일자: 2005. 11. 16

게재확정일자: 2005. 11. 22

## 참고문헌

- 짐 아이프(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김형식/여지영 역), 인간과 복지.
- 이순주(2002), 「칠레 여성정책의 변화와 여성발전」,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 “Situación jurídica de la mujer rural en diecinueve países de América Latina” [http://www.fao.org/documents/show\\_cdr.asp?url\\_file=/docrep/U5615E/U5615E00.htm](http://www.fao.org/documents/show_cdr.asp?url_file=/docrep/U5615E/U5615E00.htm).
- Acevedo, Marta. “Miradas Sobre el Aborto” <http://www.gire.org.mx>.
- Amnistía Internacional, “Muertes intolerables.” *México: 10 años de desapariciones y asesinatos de mujeres en Ciudad Juárez y Chihuahua*, Londres, Agosto 2003, p. 65.
- Beristáin, Laura Salinas(coord.)(1995), *Los derechos humanos en las leyes mexicanas, Situación de la mujer en México. Aspectos jurídicos y políticos*, Mexico: Comité Coordinador para la IV Conferencia Mundial de la Mujer,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 Fondo de Pobl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 Bunch, Charlotte(1990),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Toward a Re-Vis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2, pp. 486-498.
- Cano, Gabriela(1996), “Más de un Siglo de Feminismo en México,” *Debate Feminista*, Vol. 14, Octubre, pp. 345-360.
- CNDH, Comisión Nacional Mexicana de Defensa y Promo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A.C.(2003) *Manual para Promotoras y Promotores de Derechos Humanos. Derechos de la Mujer. Mecanismos para Combatir la Discriminación*.
- de Pazos, Margarita González(1987a), “La mujer en la Constitución de 1917,” *Alegatos*, No. 6, pp. 45-51.
- \_\_\_\_\_ (1987b), “Las reivindicaciones femininas y el derecho

- internacional,” *Alegatos*, No. 7, pp. 36-44.
- Eisler, Riaine(1987), Human Right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for Action, *Human Rights Quarterly*, Vol. 9, pp. 287-308.
- Equidad de Género(2004), *Agenda de Estadísticas Básicas del Presupuesto Federal 2004*, Mexico: Equidad de Género: Ciudadanía, Trabajo y Familia A.C.
- Escobar, Guillermo(ed.)(2004), *Derechos de la Mujer, II Informe sobre Derechos Humanos*, Madrid: Trama Editorial.
- Falcón, Marta Torres(2002), “De la invisibilidad a la propuesta de un nuevo paradigma: El debate actual sobre mujeres y derechos humanos”, en Elena Urrutia(coord.), *Estudios sobre las mujeres y las relaciones de género en México: aporte desde diversas disciplinas*,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 Forti, Sarah(2005),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Women's Human Rights: Field Perspectives”, Conference Paper: *The Winners and Losers from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 Hernández, Juan Carlos and Norma Ubaldi Garcete(2004), *Los Derechos Reproductivos en la Legislación y en las Políticas Públicas de México*, Mexico D.F.: Grupo de Información en Reproducción Elegida, A.C.
- INEGI/INMUJERES(2004), *Hombres y Mujeres en México*, 8a edición.
- INMUJERES(2003), *Las mexicanas y el trabajo II*.
- INMUJERES(2004), *Violencia de género en las parejas mexicanas: Resultados de la Encuesta Nacional sobre la Dinámica de las Relaciones en los Hogares 2003*.
- ICFTU, International Congederation of Trade Unions(1997), “Internationally-reorganized Core Labour Standards in Mexico: Report for the WTO General Council Review of the Trade Policies of Mexico” (Geneva, 7-8 October 1997) <http://www.itcilo.it/english/actrav/telearn>

[/global/ilo/standard/mexico.htm](http://global/ilo/standard/mexico.htm).

- La Botz, Dan(2005), "Mexican Women 2005: Their Condition an Indictment of Neoliberal Capitalism and Free Trade," *Mexican Labor News & Analysis*, Vol. 10, No. 3. March. <http://www.ueinternational.org/>
- Nuestras Hijas de Regreso a Casa(NHRC), A.C.(2005), "Actualización de los casos 2005" <http://www.muieresdejuarez.org/>
- Rojas Rojas, Cristián(2000), *Execution of The Platfom of Actio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5: MEXICO, Summary Report*. México: CONMUJER.
- Scholtys, Britta. "Esperanza Brito: La Historia del Feminismo en México", <http://www.nodo50.org>.
- Shultz, Jim(2002), "Promise to Keep : Using Public Budgets as a Tool to Advanc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flections and strategies based on a three-day dialogue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budget activities, convened by the Mexico City office of Ford Foundation and FUNDAR-Center for Analysis and Research, in Cuernavaca, Mexico, January.
- Toto Gutiérrez, Mireya(1999), "Tendencias y Perspectivas de Los Derechos de la Mujer," en Memoria del Seminario, *Los Derechos de la Mujer en la Legislación nacional*. Mexico D.F.: Academia Mexicana de Derechos Humanos.
- U.S Dept. of Labor Bureau of International Labor Affairs and U.S. Embassy(2002), *Foreign Labor Trends: Mexico*.
- United Nations-Office of the United Nait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2004), "Status of Ratifiantion of The Princip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06/09)
- Valdes, E., B. Muñoz y O. Donoso(eds.)(2004), *1995-2003: Have Women Progressed? Latin American Index of Fulfilled*

*Commitment*, FLACSO/UNIFEM.

Valdés, Teresa(2000), *De lo social a lo político: La acción de las mujeres latinoamericanas*, Santiago: LOM ediciones.

World Economic Forum(2005), *Women's Empowerment: Measuring the Global Gender Gap*, Geneva: World Economic Forum.

Young, Linda Wilcox(1998), "The Impact of Neoliberalism on Women in México: A Survey of the Evidence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1998 meeting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The Palmer House Hilton Hotel, Chicago, Illinois, Sep. 24-26, 1998.

<http://www.catolicasporelderechoadecidir.org/>

인터뷰(2005/02/02) Araceli Vázquez Alarcón, INMUJERES

인터뷰(2005/02/04) Erika Estrada, GIRE

인터뷰(2005/02/07) Marta Torres Falcón, PIEM, El Colegio de México

*La Jornada*(2002/11/26)

*La Jornada*,(2005/03/08)